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9월 18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경한

●대통령령 제21007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

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2. 재택(在宅) 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

제3조(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4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교도소·소

二

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 치료감호소의 장(이하 “수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죄명을 말한다.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조문을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부착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집행지휘) 검사는 부착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제7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판결문 등본,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 그 밖의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부착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기에 앞

서 피부착명령자에게 법 제14조와 이 영에 따른 피부착자의 의무사항 및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1.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
2.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3.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부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부착명령의 집행정지)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지체 없이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서 부착장치를 분리한 때부터 정지된다.

12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 부착장치를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피부착자가 구금된 경우에는 즉시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의 구금을 해제하는 결정이 있으면 구금을 해제하기 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해당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치료, 전자장치의 교체, 그 밖에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부착자의 신체 또는 주거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분리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일시 분리 사실을 대장에 적고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제12조(주거이전 등의 신고의무) ① 피부착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 또는 출국 목적, 주거이전 일자 또는 출국 기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부착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출국신고를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피부착자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요청을 받으면 피부착자의 출입국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피부착자는 입국한 후 지체 없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3조(상담치료 등의 집행)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정신보건시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3. 성폭력범죄자를 치료하고 성폭력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 또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난 사람이 부착을 마친 날부터 5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수신자료를 폐기한다.

② 수신자료의 폐기는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부착명령 가해제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에 기재된 가해제일에 전자장치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
착명령의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의 가해제 취소결정이 있으면 피부착명령
자에게 결정서를 제시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가해제가 취소된 경우 부착명령 집행기간은 부착장치를 피부착
명령자의 신체에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19조(결정의 고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에
게 송달하면서 법 제22조제1항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결정을 한 경
우 그 결정서를 피치료감호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에
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수용기관의 장
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가석방예정자 및 피치료감호자에게 전
자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치료감호소의 장의 통보 등) ① 치료감호소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부착결정자”
라 한다)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에게
이송되는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았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부착결정자를 인수한 수용기관의 장은 그가 출
소하기 5일 전까지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
부착결정자의 석방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2조(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
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394호, 2007. 4. 27. 공포, 2008. 9. 1. 시행)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영 제2조)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피부착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휴대용 추적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는 재택 감독장치로 구성함.

나. 부착명령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집행 정지(영 제7조 및 제8조)

부착명령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부착자에게 교부하고, 부착장치를 원칙적으로 그 발목에 부착하며, 재택 감독장치를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부착명령 집행정지 기간에는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도록 함.

다. 전자장치의 일시 분리(영 제10조)

- (1) 피부착자의 치료, 전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자장치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
- (2)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치료, 전자장치 교체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피부착자의 신체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일시 분리를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승인을 받고 이를 대장에 적어 비치하도록 함.

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구체화(영 제11조)

- (1) 전자장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법률상의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2)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충전·휴대·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장치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도록 함.
- (3) 이와 같이 전자장치의 효용유지 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엄정하고 효율적인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